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63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 2021나6318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19가단254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스트

담당변호사 최승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아라, 배수진

변론 종결 2022. 10. 5.

판결 선고 2022. 10. 19.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19가단2545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1.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1) 사이에 2019. 7. 23.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7. 23. 접수 제1061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와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사해행위인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선의였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수정

판사정하정

판사진현지

별지

1) B에 대한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다.